4. 建設業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6－125號 1996. 4. 23

1. 개정이유

WTO협정시 금년부터 외국업체가 건설업면허를 받아 국내 민간건설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양허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건설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면허신청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업체에게 건설업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업면허기준중 자본금은 외국에 소재한 본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인기술자도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기준을 정함.

나.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도 전문건설업이나 주택사업등 다른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신청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경력신고한 자도 건설업면허기준 및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500－4082, 40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건설교통부는 '95.4.23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금년부터 외국업체가 건설업면허를 받아 국내민간건설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건설업계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ㅇ외국업체에서 건설업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업면허기준중 자본금은 외국에 소재한 본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외국인기술자도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는 등 적용기준을 정함
- ㅇ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은 건설업에 관한 경험이 없는 업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이나 주택사업등 다른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면허를 신청하도록 함
- ㅇ건설업면허시 건설업자가 보유하거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만을 인정하던 것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신고하여 기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도 인정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96년 5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법시행령의 항목별 개정방안

1. 외국업체에 대한 면허기준의 적용

현황 및 문제점

ㅇ'96년부터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업체도 건설업면허를 발급받게 되며, 이 경우 외국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인력·시설·장비등은 면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영 제10조 제1항 별표 4)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외국에 소재한 본사가 보유한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행 면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국내에 설치된 지사가 보유한 것만을 인정할 경우는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하여야 함.

개정 방안

ㅇ외국업체에 건설업면허 발급을 위하여 면허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외국에 있는 본사가 보유한 것 전부를 인정할 경우

・외국업체가 건설업면허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업체도 그만큼 외국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나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게 되어 외국업체의 능력을 과다 평가하게 됨

－외국에 있는 본사가 보유한 것 전부를 인정할 경우

・외국업체가 건설업면허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업체도 그만큼 외국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게되나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게 되어 외국업체의 능력을 과다 평가하게 됨

－지점이 보유한 것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적정한 능력을 보유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는데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통상마찰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이에 따라 면허기준 중

－자본금은 외국에 있더라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가 보유한 것을 인정

－외국인기술자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건설업에 관한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경력신고한 자는 인정

-공제조합 출자의무 및 시설·장비 등은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적용

※일본의 경우 외국업체에 건설업허가시 허가기준은 자국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외국인이 경력임원 및 기술자인 경우는 외국인등록 및 건설성장관의 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일반건설업면허 신청자격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 등 다른 건설업을 30월이상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영 제10조 제2항 제1호)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면허는 건설업에 관한 경험이 없는 업체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

-신규면허취득 후 도산하는 업체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하도급업체도 연쇄도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도 함

('95년도 부도발생한 업체 144개사중 면허취득후 3년이내인 업체가 97개사(67%))

○ 건설업계에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건설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음('96.1.30 건설업계 대표와 장관 간담회사)

개정 방안

○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업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해 오던 업체로 제한함.

3. 학력 ·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인정

현 행

○ 건설업자는 건설업면허기준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보유하여야 함(영 제10조 제1항, 별표 4)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4인(기사 1급 1인 포함)

－토목건축공사업 : 10인(기사1급이상 4인 포함)

－특수건설업 : 5인(기사1급이상 2인 포함)

－전문건설업 : 기술자 1~5인, 기능사 2~3인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함

다만, 공사금액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영 제36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95. 8. 4)으로 설계 · 감리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학력과 경력에 의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진출하는 외국기술자도 학력 · 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기술자도 일정한 학력 · 경력이 있으면 건설업면허기준과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건설기술인력 구인난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에 따라 적정수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95. 3. 11 감사원 통보사항)

현황 및 문제점

ㅇ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자외에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법에서도 건설기술자로 인정함

ㅇ다만, 학력·경력기술자의 확대적용할 경우 건설기술자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부실공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기술자는 실제 공사의 시공관리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제한함.

- 300억원이상 주요공사 : 당해공사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5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분야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이상 공사 : 당해공사분야 고급이상 기술자나 중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미만 공사 : 당해공사분야 중급이상 기술자나 초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의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ㅇ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나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나 2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정한 때에는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함

※국내기술자도 학력·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취득자 우대제도에 반하고, 국가기술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반대하나 학력·경력에 의한 기술인정제도를 외국기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법적용에 형평을 잃은 것이며, 국내업체의 기술인력확보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여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관계부처(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추진코자 함.